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사 건 번 호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승 현 외 1

이해관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귀 재판소가 2017. 12. 7.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 사건에 대해 요청한 의견 제출 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송부드립니다.



I.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 및 본 의견서의 취지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요지

청구인들이 2017. 11. 1.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사건의 심판청구서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 김승현(청구인 1)은 2017. 9. 20.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를 사용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2조의5(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함)에 근거한 대리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해 본인이라는 점이 확인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추미선(청구인 2)은 2017. 10. 19. 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기 사용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근거한 대리점 직원의 요구에 불응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 신분증 등 증서 제시를 요구 받음에 따라 익명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결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및 서류에 관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3.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휴대폰 부정이용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수단의 적합성), 입법목적은 달성할 다른 덜 침익적인 수단이 존재(침해의 최소성)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는 점(법익의 균형성)을 들어, 청구인들의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4. 부처의견 개요

이하에서 말씀드리는 우리부의 의견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자기관련성, 현재성, 보충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할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해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수권범위를 넘어서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I.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그 취지

심판대상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은 1983. 12. 30. 법률 제3686호(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제정되어, 그 후 4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2017. 7. 26. 개정 법률 제14839호가 시행 중입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는 2014. 10. 15. 개정에 따라 삽입되어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의5 제2항 및 제3항이 일부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대안¹⁾이 2014. 9. 30.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공포·시행된 것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2012. 12. 17. 이우현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03098호, 대안반영폐기, 現 제32조의4), 2013. 7. 16. 이우현의원 대표발의²⁾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05988호, 대안반영폐기, 現 제32조의5) 등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가결된 법안 중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의무에 관한 부분은 2012. 12. 17. 및 2013. 7. 16. 이우현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된 내용이 반영된 것인데, 위 각 개정법률안에서는 개정이유를 현금

1) [첨부자료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첨부자료2] : 이우현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받는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방지하고 사망자, 완전 출국 외국인 등의 명이나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에 악용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입법자의 의도는 ‘휴대전화 개통사기’ 및 ‘타인명의로의 휴대전화 개통’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행 도구로서의 휴대전화가 양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고,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집적하여 일반적인 범죄 수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Ⅲ.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

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 중 입법작용에 해당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 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법률이 집행행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뿐 특정한 집행행위를 일의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제32조의4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위 규정을 위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확인 여부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은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SKT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는 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습니다.

2.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만이 헌법소원 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됩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하여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5헌마124 결정)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는 ①문제된 법률의 입법목적, ②실질적인 규율대상, ③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④규범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33 결정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경우 수규자는 문언 상 전기통신사업자, 즉 이동통신사업자임이 분명하므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제3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를 제시할 실질적 의무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도출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규율한 의무 이행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로 청구인이 직접적인 규율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자인 청구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듯 귀 재판소가 실시하고 있는 요건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에게는 예외적으로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문제된 법률의 입법목적)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목적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사기’ 및 ‘타인명의로의 휴대전화 개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범행도구로서의 휴대전화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을 뿐 제3자인 청구인을 함께 규율하고자 하는 의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사건 심판 조항은 휴대전화 개통사기 및 타인명의로의 휴대전화 개통 사전 방지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규율대상) 다음으로, 문언 상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규율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신청이 거절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민사상 계약 체결 거절 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계약 체결 거절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기에서 살펴보았듯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하지 않은 한, 이 사건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른 민사상 결과일 뿐이지 이 사건 조항이 제3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고 그 진지성의 정도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범 수급자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 가능성) 마지막으로, 만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에 부담이 되는 경우 그 이동통신 사업자가 영업의 자유 침해로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해야 할 근거도 없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인터넷 게시판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 대한 귀 재판소의 결정(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을 예를 들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결정은 위 조항이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원용하기 부적절한 선례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개별 계약 체결 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이용자는 익명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바(예컨대,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발신자 미 표시 문자 발송 등) 그 궤를 달리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규율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은 위 조항에 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헌법재판소 1989. 7. 21. 89헌마12).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은 주장취지는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의 제공이 강제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구인 2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본인 확인 요구에 불응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의 경우 현재 위와 같은 기본권들이 침해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청구인 2의 권리를 현재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결여한 것입니다.

4. 보충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또 다른 사인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에 있어 그 계약을 거절당한 경우 “계약체결절차이행 청구 소송” 내지 “계약체결의무 확인 소송”과 같은 소송을 통해 청구인이 의도하고자 하는 비실명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도모할 수 있고, 위 소송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계약체결의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타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여러 범죄행위 등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 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이용약관에 본인확인

절차를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볼 수 있습니다.

5. 소 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보충성 요건 또한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IV.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주장에 대한 의견

앞서 언급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하에서 언급하는 이유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1. 기본권 제한 여부

(1) 익명통신의 자유 제한 여부

청구인들은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의 보호범위에는 통신의 내용, 당사자, 수신지와 발신지, 정보의 형태 및 발신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인 ‘익명 통신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제하여 익명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귀 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으로(2011. 8. 30. 2009헌바42), 구체적으로 통신의 자유란 본인의 의사 또는 적법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반하여 송·수신된 내용 및 그 과정이 공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른바 ‘휴대전화 개통사기’ 및 ‘타인명의로의 휴대전화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체결 시점에 그 상대방이 본인임을 일회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칠 뿐, 확인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거나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전화, 문자 등) 이용에 있어 발신인, 송·수신 내용, 정보의 형태, 통신의 횟수 등의 공개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규율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른 본인 확인절차로 인해 단말기 이용에 있어 청구인들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밝혀지거나 통신의 내용 등 일체의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 사건에 대한 귀 재판소의 결정례(2012. 8. 23. 2010헌마47)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은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 가입 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용자가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것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단순히 이용 계약 체결에 있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인 바 그 자체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구체적 게시글과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연결짓거나 기타 개인정보를 보관함에 따른 유출 등 악용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 사례인 반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단말기라는 통신매체의 이용에 있어서 본인 확인할 의무나 개인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에 한하여 일회적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양 사안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익명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별도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습니다.

귀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을 문제삼으며 침해되는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거시한 사안에서, “위 기본권들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들로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위 기본권들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 조항이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강제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뿐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귀 재판소의 선례에 따르면, 이 사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고 동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이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침해여부를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한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본인확인정보를 수집·보관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확인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할 것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위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을 주장한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의 부당성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의 목적에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비롯하여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입법 목적의 정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기초하여 볼 때, 그 입법목적은 ‘휴대전화 개통사기’ 및 ‘타인명의로의 휴대전화 개통’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 도구로서의 휴대전화가 양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현행 법 체계 상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4,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 등 타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마치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그 목적을 오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된 입법자료들과 개정 당시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급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휴대전화 부정이용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따라 입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수단의 적합성

가) 범죄예방효과

청구인은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을 수행하여도 계획적으로 범죄를 도모하는 자는 이미 개통된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망을 피해갈 것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시행된 2015. 4. 16 이후, 2013년까지 급증하고 있었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관련 신고건수가 2017년까지 연평균 20%가 감소하였고, 피해액도 연평균 10%가 감소하는 등 명백한 범죄예방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법 시행 연도인 2015년과 비교하여 2017년까지 신고건수는 50% 이상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현황 >

(출처: 통신3사)

구분	명의도용 신고건수	명의도용 인정건수	피해액(백만원)
2012년	17,644	3,882	2,341
2013년	22,972	5,200	2,787
2014년	19,100	3,341	1,971
2015년	17,690	2,269	1,475
2016년*	14,464	1,946	1,608
2017년	8,435	1,881	1,610

* KT는 '16년부터 명의도용 피해액에 단말기 대금을 포함하여 집계

아울러 ‘타인명의로의 휴대전화 개통’을 방지하는 효과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차단한 부정개통시도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사망자 명의, 분실 신분증 등으로 차단된 개통된 건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요소가 기존 성명·주민등록번호에서 발급일자까지 확대되어, 부정개통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개통 시도 차단 현황 >

(출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구분	부정개통 차단건수
2015.4.16. ~ 2015. 12. 31.	18,183
2016년	35,435
2017년	72,395

따라서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별론으로, 청구인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도모하는 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이 없다고도 주장

하고 있는데, 실제 경찰청 범죄통계(2016년)를 살펴보면 범행동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기는 우발동기가 255,616건, 부주의가 244,196건인바, 입법자가 이를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수사과정에도 명백히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그릇된 사례 인용

청구인은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백서³⁾를 인용하며 유심을 등록하지 않는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백서를 살펴보면 이는 ‘선불 유심’ 등록에 관한 내용이고,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선불 유심’이라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국가에서는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선불 USIM 등록제를 정부 및 규제기관의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IM카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파키스탄, 르완다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National ID’를 활용해 휴대전화 가입 계약체결 시 등록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고,⁴⁾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도 법률 또는 정책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 계약 체결시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고 있는 등 휴대전화 가입시 선·후불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통신여건이 유사한 일본은 “휴대음성 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휴대음성 통신역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⁵⁾을 제정(2005.4.15.)하여 휴대전화 개통절차상 본인확인 의무를 이통사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선불 유심’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는지 여부는 개별 국가에서 통신여건, 범죄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에

3) GSMA, The Mandatory Registration of Prepaid SIM Card Users(GSMA White Paer, 2013.11월)

4) GSMA, Mandatory registration of prepaid SIM cards, April 2016, 8면

5) [첨부자료3]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 역무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서만 실시하는 독자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후불 유심’의 개통은 그 자체로 이용자가 당월 이용한 요금을 익월에 납부하는 신용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국내·외 사례를 전세계적으로 찾기 힘듭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후불 요금제가 차지하는 가입자 비중은 약 95%에 달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 관련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이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집적하도록 강제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명의도용 등 범죄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체결 당시 일회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 신분증 등을 제시할 것을 규정할 뿐, 제시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의 집적 및 유출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폐기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제도는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내세우고 있는 사안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의무의 해태 내지 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해킹 등의 유출사고의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집·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포털·SNS·이동통신 등 대규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그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개통절차의 제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른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로 인해 신분증이 없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4항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위한 증서의 종류를 구체화하도록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4항은 계약 상대방이 신분증 등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증서로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통사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⁶⁾를 수령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개통 절차(온라인 개통 등)에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과 이용약관에서 정한 증서로서 신용카드, 휴대전화(기기변경에 한합니다)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 본인확인 절차상 신분증의 대안과 비대면 개통절차상의 본인확인 수단이 존재하는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없는 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 소 결

6)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신청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 신청 후 1개월까지는 주민등록증을 갈음하여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주요 국가의 규제동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함에 그치는 것으로, 입법 이후 나타난 범죄예방 효과 등을 통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기술적 대안 존재 관련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을 범죄 발생 후 수사편의 목적으로 오인하면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나, 이는 불법행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통화내역 확인, 기지국 수사, 위치추적 등 명의를 상관없이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의 실 사용자를 검거할 수사기법이 충분히 발달되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범죄 발생 후 사후적인 수사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휴대전화 개통사기’, ‘타인명의 휴대전화 개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범죄예방에 그 제정 목적이 있어 사후적인 범죄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와 관련한 침해의 최소성을 강조하는 청구인의 관련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본인확인에 대한 대안으로 통화내역 확인, 기지국 수사, 위치추적 등 명의와 관계없이 수행하는 수사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 또는 용의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한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수사기관에게 용의자와 우연히 통화를 한 이용자나, 용의자와 우연히 인근거리에 있었던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수사기법을 제안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진정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지국을 활용한 수사기법은 우연히 범행현장 인근에 있었던 모든 이용자의 통신 기록을 부득이 광범위하게 수집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방법임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법률적 대안의 존재 관련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통해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대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에서 문제되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계약 체결 시 사전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본인확인을 하게 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방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심판청구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에 근거하여 구축·운영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률적 대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사업법 2010. 3. 22.자 개정을 통해 2010. 9. 23.자로 시행되었지만, 2013년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및 부정개통은 증가하였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법률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그릇된 귀 재판소 결정 인용에 따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귀 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이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 조항은 그와 같은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귀 재판소의 결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형식의 규율을 하고 있었던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명확성원칙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귀 재판소가 타인의 통신 매개를 금지하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즉,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결정은 형사처벌 요건을 구성하는 문언의 명확성의 정도와 그 위임의 형식에 대해 귀 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타인의 통신 매개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경우 타인의 통신 “매개”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의 “개통”, 즉 “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서 문제된 조항과는 그 적용 대상 또한 달리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통신 매개와 관련한 귀 재판소의 결정을 그릇되게 인용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정의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유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라) 귀 재판소의 결정례

별론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련 귀 재판소의 결정례(2015. 6. 25. 2014헌마463)에서는 ‘정확성, 신뢰성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비견할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및 ‘본인확인업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동의한 기간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행위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관련 귀 재판소의 결정례(2015. 7. 30. 2012헌마734, 2013헌바338)에서는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 및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나 후보자 비방죄로 규제하는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실명확인제도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는 계약 체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것으로, 실명확인에 큰 시간과 비용이 소용되지 않는 것이고, 달리 사후적인 처벌수단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사기 방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 소 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없거나, 대상을 혼동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 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 볼 때 개통 시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4)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휴대전화 부정이용 방지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익명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정도를 비교형량해 볼 때, 그 정도가 과도

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통신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에 해당하고,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집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각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댓글로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관한 귀 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통신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최초 개통 시에만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할 뿐, 휴대폰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때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아니 하는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전제한과는 별개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관한 귀 재판소의 결정은 익명성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의 특성과 해외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의 집합체로서 이용자는 언제든지 손쉽게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해외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의 특성상 해외 사이트에는 법 적용이 곤란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해외 사이트로 도피하게 되는 결과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켜

실질적인 법 집행이 곤란한 부분을 귀 재판소는 위 선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휴대전화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장소도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등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와는 달리 법 집행의 곤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와 달리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에 대한 유사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후불 유심’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며, ‘선불 유심’의 경우도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사전제한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상을 혼동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당하다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이동통신 간의 차이 및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의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주장의 부당성 : 공·사익의 비교형량

청구인은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가 휴대전화의 부정이용 및 범죄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통해 얻어지는 명백한 공익은 수사의 용이성뿐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대상은 극소수인 범죄자인데, 당해 조항은 본인확인을 전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여, 전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감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실제 달성하는 공익인 수사의 용이성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과도한 사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휴대전화 개통사기’, ‘타인명의로의 휴대전화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 자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행하지 않는 해외 사례가 오히려 더 적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청구인 주장의 근거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는 명의도용 신고 건수를 지표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 명의도용 신고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는바, 범죄 예방에 있어 실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명의로의 휴대전화 개통’을 방지하는 효과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차단한 부정개통시도 건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2015년 18,183건, 2016년 35,435건, 2017년까지 72,395건의 부정개통 시도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개통 시에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여러 증빙 수단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사익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침해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개통사기 방지’ 및 ‘타인명의로의 휴대전화 개통’을 방지하는 등 달성되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 선례가 존재하고 범죄 예방의 효과가 명백히 달성되고 있는 점 등을 통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사인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수집 및 개인정보의 집적 관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 과정 중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출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해 제정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서, 규율대상을 혼동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그릇된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남용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통신자료 제공’이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남용되고 있으며, 이는 당해 조항들에 따른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그릇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통신자료 제공 제도 자체에 대한 통제방안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의 위헌성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므로, 본 건에서 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마) 소 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그 입법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일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V. 결 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휴대전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전화통화의 기능을 넘어 금융 등 각종 경제·사회 활동과 결합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은행의 출범으로 계좌개설·대출도 휴대전화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확인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휴대전화 개통사기’ 및 ‘타인명의 휴대전화 개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당해 조항에 따라 본인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당해 조항들이 수사편의를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오해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수권범위를 넘어서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자기관련성·직접성·보충성·청구기간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설령 청구인들의 청구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청구로 인정한다 하시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이우현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3. 7. 16.)
3.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2018.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헌법재판소 귀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1177
----------	-------

제안연월일 : 2014. 7. .

제안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15일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2년 9월 5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0일 조해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2월 17일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월 28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4월 24일 안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9일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6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2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4월 11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7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기기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안, 2012년 6월 22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3건의 법률안은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미

래 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3.6.18.)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9월 10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0월 28일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3.12.1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3년 7월 16일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1월 1일 이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2월 31일 강동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9월 6일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2월 5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함.

나.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2.18.),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2.26.),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2.27.) 및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4.30.)에서 20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기기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1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이를 통합·조정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4.4.3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후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의 등록제 전환(안 제2조제13호·제22조제2항제1의2호 신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포함시켜 해당 사업자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안 제6조)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함

다.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19조)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를 승인하도록 함

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안 제32조)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안 제32조의3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
자는 이에 따라야 함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안
제32조의4 신설)

- 1) 자금 제공 또는 유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
치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동 행위를 알선·중개·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토
록 함
-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
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
하여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한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안 제84조2 신설)

- 1)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變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변작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중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및 「전파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④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53조제5항”을 “제53항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제4항의”를 “제6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⑪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휴지·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휴지·폐지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휴지·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전시·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황에 대응하거나 중대한 재난의 방지 또는 수습을 위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유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인의 정관 및 이용약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3.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제2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22조의3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실시 계획”을 “실시 계획(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 전단”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3조 중 “제22조제1항 전단”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1항 전단”을 “제22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항 후단이나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제32조제1항 전단 중 “이용자로부터”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각각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기준·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로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

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불법대부광고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

대방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간첩방지시스템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및 서류에 관한 정

보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6(명의로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로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명의로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명의로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7(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본문 중 “제공”을 “제공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 지연”으로 한다.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의”를 “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또는 제3항에”로, “인가신청”을 “인가신청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속협정을 변경하거나 폐

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 변경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을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를 “구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으로 한다.

제5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 중 “제5항은”을 각각 “제6항은”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를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제4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로, “제32조까지”를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로, “제82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5조의2 중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96조제5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제97조제3호 중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

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용·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제1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2호의2,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무를 위반한 자”를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5조제5항”을 “제3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제104조제6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2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제8호·제9호”를 “제1항, 제3항제1호,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로,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협정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속협정을 체결·변경·폐지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2조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2. (생 략)</p> <p>1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 -----.</p> <p>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p> <p>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p> <p>14.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p>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② (생략)

<신설>

<신설>

③ ~ ⑥ (생략)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및 「전파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④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⑤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⑥ ~ ⑩ (생략)

<신설>

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 ①·

② (생략)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신설>

<신설>

--- 제6조제6항에 따른 ----
-----.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휴지·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휴지·폐지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휴지·폐지

5.·6. (생략)

② (생략)

<신설>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인의 정관 및 이용약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3.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④·⑤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 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 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

제1호 또는 제1호의2-----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⑤ 제1항-----

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⑥ 제1항-----

-----.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별정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이나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 제22조 제1항-----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

-----제22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한다.

1. ~3. (생략)

<신설>

4. ~ 6. (생략)

③ (생략)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에 따른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4.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

-----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에 -----

----- 제4항에 -----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기준·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
-.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불법 대부광고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신 설>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합 방법을 통한 전기통

<신 설>

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신 설>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
· 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
한 정보

4. 그 밖에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및 서류에
관한 정보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
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
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
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
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
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명의
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

<신 설>

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7(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 ④
(생략)
<신설>

⑤·⑥ (생략)

⑦ 제6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손해배상) -----
----- 제공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
생과 이의 처리 지연-----.

-----.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설비
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
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
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
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

-----.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은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생략)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속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

-----.

⑤ ----- 제2항 또는 제3항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생 략)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 (생 략)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음)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1. 2. (생략)

⑤ (생략)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 제1항 및 제2항 ----

-----.

1.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 제7항 -----

----- 제7항 -----

-----.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제44조(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 제44조(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⑦ (생략)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 ~ ② (생략)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6항은 -----

-----.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6항은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

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
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
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
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
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
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

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
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
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
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
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
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

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8항-----
 -----.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

 -----.

-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

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생략)

② (생략)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3, 제23조, 제24조, -----

-----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

-----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를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④ (생략)

제95조의2(벌칙)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신설>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

<신 설>

<신 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96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

6. (생략)

<신설>

7. ~ 12. (생략)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7. (생략)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 ~ 12.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

-----.

1. 2. (현행과 같음)

3. ----- 변경등록을 -----

4. ~ 7. (현행과 같음)

<삭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
으로 표시한 자

2. 제84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
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
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104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제104조(과태료) ① 제51조제2항
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
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
술적 조치의 운용·관리 실태를

<신 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 -----

-----.

1.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

2. (현행과 같음)

⑤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현행과 같음)

4. -----

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신 설>

<신 설>

5. 제35조제5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 7. (생략)

8.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9. ~ 15. (생략)

<신 설>

16. · 17.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5. 제35조제6항-----

6. · 7. (현행과 같음)

<삭 제>

8. ~ 14. (현행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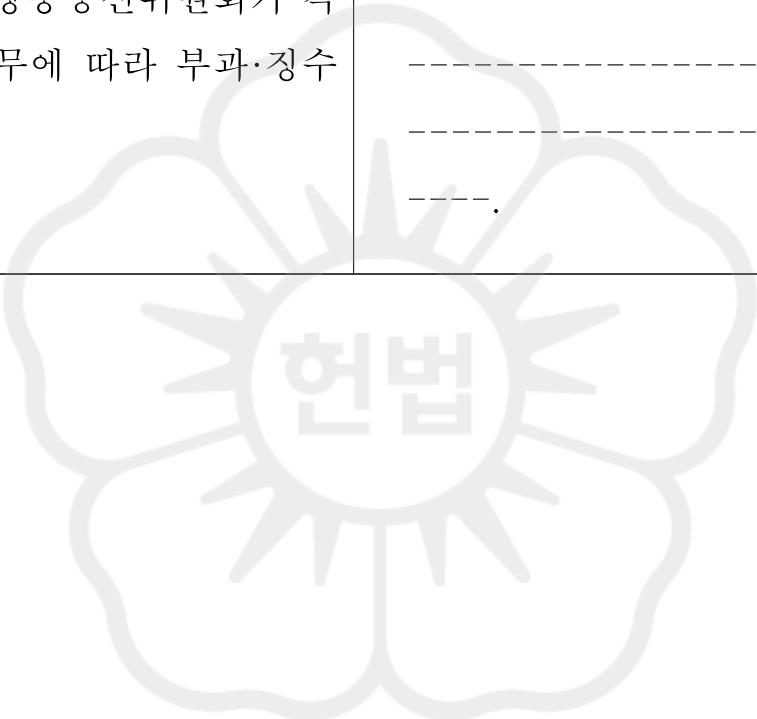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16. · 17.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제5항-----

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
 만, 제4항제8호·제9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
 과·징수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 제1항, 제3항제1호, 제5항제
2호의2·제4호의2·제8호 ----
 ----- 제5항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88
----------	------

발의연월일 : 2013. 7. 16.

발 의 자 : 이우현 · 이완영 · 이재영
박창식 · 정의화 · 노철래
한선교 · 신동우 · 김을동
장기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면서 사망자, 완전 출국 외국인 등의 명이나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가입 신청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 실시간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부정 가입 방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인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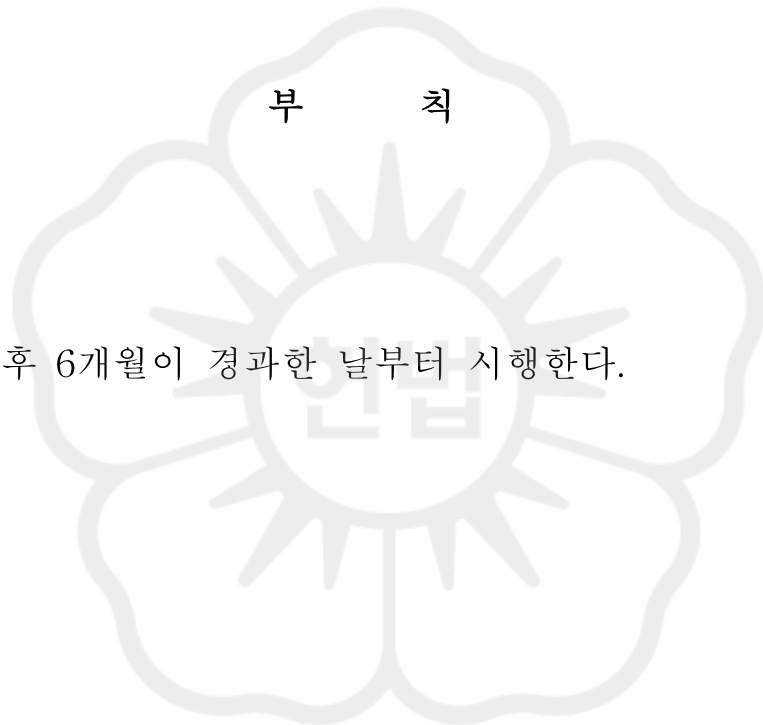
- 4 -

4. 그 밖의 방법에 따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45 443 411 479"><신 설></p>	<p data-bbox="815 443 1385 1151">제32조의3(부정 가입 방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 data-bbox="815 1176 1385 1821">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인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 data-bbox="815 1845 1385 1951">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p>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
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
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4. 그 밖의 방법에 따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면서 사망자, 완전 출국 외국인 등의 명이나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신청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게 실시간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이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 등은 미리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 산출이 어려움.

4. 작성자

국회의원 이우현 의원실 이학주 비서관(788-2642)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七年四月十五日法律第三十一号)

最終改正：平成二〇年六月一八日法律第七六号

[第一章 総則（第一条・第二条）](#)

[第二章 本人確認等（第三条-第十二条）](#)

[第三章 監督（第十三条-第十五条）](#)

[第四章 雑則（第十六条-第十八条）](#)

[第五章 罰則（第十九条-第二十六条）](#)

[附則](#)

第一章 総則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携帯音声通信役務の提供を内容とする契約の締結時等における本人確認に関する措置、通話可能端末設備等の譲渡等に関する措置等を定めることにより、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の管理体制の整備の促進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携帯音声通信」とは、携帯して使用するために開設する無線局（第四項において「無線局」という。）と、当該無線局と通信を行うために陸上に開設する移動しない無線局との間で行われる無線通信のうち音声その他の音響を送り、伝え、又は受けるものをいう。

- 2 この法律において「携帯音声通信役務」とは、[電気通信事業法](#)（昭和五十九年法律第八十六号）[第二条第三号](#)に規定する電気通信役務（以下「電気通信役務」という。）のうち携帯音声通信に係るものであって、その電気通信役務の提供を受け者の管理体制の整備を促進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総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 3 この法律において「携帯音声通信事業者」とは、[電気通信事業法第二条第五号](#)に規定する電気通信事業者のうち携帯音声通信役務を提供するものをいう。
- 4 この法律において「携帯音声通信端末設備」とは、[電気通信事業法第二条第二号](#)に規定する電気通信設備のうち携帯音声通信を行うための無線局の無線設備をいう。
- 5 この法律において「通話可能端末設備」とは、携帯音声通信端末設備であって携帯音声通信役務の提供に利用されている電気通信回線設備（[電気通信事業法第九条](#)に規定する電気通信回線設備をいう。）に接続され通話が可能なものをいう。
- 6 この法律において「契約者特定記録媒体」とは、携帯音声通信事業者との間で携帯音声通信役務の提供を内容とする契約（以下「役務提供契約」という。）を締結している者（以下「契約者」という。）を特定するための情報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媒体（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っ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に係る記録媒体をいう。）であって、携帯音声通信端末設備その他の設備（通話可能端末設備を除く。）に取り付けることにより、それと一体として通話可能端末設備を構成するものをいう。

第二章 本人確認等

（契約締結時の本人確認義務等）

第三条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携帯音声通信役務の提供を受けようとする者との間で、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るに際しては、運転免許証の提示を受ける方法その他の総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当該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相手方（以下この条及び第十一条第一号において「相手方」という。）について、次の各号に掲

げる相手方の区分に応じ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以下「本人特定事項」という。）の確認（以下「本人確認」という。）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自然人 氏名、住居及び生年月日
- 二 法人 名称及び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
- 2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相手方の本人確認を行う場合において、会社の代表者が当該会社のために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るときその他の当該携帯音声通信事業者との間で現に役務提供契約の締結の任に当たっている自然人が当該相手方と異なるとき（次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は、当該相手方の本人確認に加え、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の任に当たっている自然人（第四項及び第十一条第一号において「代表者等」という。）についても、本人確認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3 相手方が国、地方公共団体、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その他の総務省令で定め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当該国、地方公共団体、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その他の総務省令で定めるもののために当該携帯音声通信事業者との間で現に役務提供契約の締結の任に当たっている自然人を相手方とみなして、第一項の規定を適用する。
- 4 相手方（前項の規定により相手方とみなされる自然人を含む。以下この項及び第十一条第一号において同じ。）及び代表者等は、携帯音声通信事業者が本人確認を行う場合において、当該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対して、相手方又は代表者等の本人特定事項を偽ってはならない。

（本人確認記録の作成義務等）

第四条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本人確認を行ったときは、速やかに、総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本人特定事項その他の本人確認に関する事項として総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関する記録（以下「本人確認記録」という。）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本人確認記録を、役務提供契約が終了した日から三年間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譲渡時の本人確認義務等）

第五条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通話可能端末設備又は契約者特定記録媒体（以下「通話可能端末設備等」という。）の譲渡その他の携帯音声通信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としての役務提供契約上の地位の承継に基づき、契約者の名義を変更するに際しては、運転免許証の提示を受ける方法その他の総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当該変更により新たに当該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携帯音声通信役務の提供を受けようとする者（以下「譲受人等」という。）について、譲受人等の本人特定事項の確認（以下「譲渡時本人確認」という。）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前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携帯音声通信事業者が譲渡時本人確認を行う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中「相手方」とあるのは「譲受人等」と、同条第二項及び第四項中「本人確認」とあるのは「譲渡時本人確認」と、「第十一条第一号」とあるのは「第十一条第二号」と、同条第三項中「第一項」とあるのは「第五条第一項」と、前条第一項中「本人確認」とあるのは「譲渡時本人確認」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媒介業者等による本人確認等）

第六条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本人確認又は譲渡時本人確認を、当該携帯音声通信事業者のために役務提供契約の締結の媒介、取次ぎ又は代理を業として行う者（以下「媒介業者等」という。）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2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本人確認又は譲渡時本人確認を媒介業者等に行わせることとした場合には、第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及び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本人確認又は当該譲渡時本人確認を行うことを要しない。

3 第三条及び第四条第一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媒介業者等が本人確認を行う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条中「携帯音声通信事業者」とあるのは「媒介業者等」と、第四条第一項中「本人確認を行ったとき」とあるのは「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媒介業者等が本人確認を行ったとき」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4 第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第四条及び前条第一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媒介業者等が譲渡時本人確認を行う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中「携帯音声通信事業者」とあるのは「媒介業者等」と、「相手方」とあるのは「譲受人等」と、同条第二項及び第四項中「本人確認」とあるのは「譲渡時本人確認」と、「第十一条第一号」とあるのは「第十一条第二号」と、同条第三項中「第一項」とあるのは「第五条第一項」と、第四条第一項中「本人確認を行ったとき」とあるのは「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媒介業者等が譲渡時本人確認を行ったとき」と、「本人確認に関する事項」とあるのは「譲渡時本人確認に関する事項」と、前条第一項中「携帯音声通信事業者」とあるのは「媒介業者等」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譲渡時の携帯音声通信事業者の承諾)

第七条 契約者は、自己が契約者となっている役務提供契約に係る通話可能端末設備等を他人に譲渡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親族又は生計を同じくしている者に対し譲渡する場合を除き、あらかじめ携帯音声通信事業者の承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2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譲受人等につき譲渡時本人確認を行った後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媒介業者等が譲渡時本人確認を行った後でなければ、前項に規定する承諾をしてはならない。

(契約者確認の求め)

第八条 警察署長は、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を図るため、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各号に定める罪に当たる行為に係る通話可能端末設備等につき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対し、国家公安委員会規則で定める方法により、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契約者について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項の確認を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一 この法律に規定する罪（第十九条から第二十二條まで及び第二十六條（第十九条から第二十二條までの罪に係る部分に限る。）の罪に限る。）に当たる行為が行われた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場合

- 二 携帯音声通信役務が**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二百四十六条**の罪又は**第二百四十九条**の罪に当たる行為その他携帯音声通信役務が多く利用され、かつ、その行為による被害又は公共の危険を防止する必要性が高い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罪に当たる行為に利用されていると認めるに足る相当の理由がある場合
- 2 国家公安委員会は、前項に規定する国家公安委員会規則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総務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契約者確認）

- 第九条**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確認の求めを受けた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当該契約者について、総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本人特定事項その他契約者が携帯音声通信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としての役務提供契約上の地位を有し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して総務省令で定めるものの確認（以下「契約者確認」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
- 2 総務大臣は、前項に規定する総務省令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国家公安委員会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携帯音声通信事業者が契約者確認を行う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中「相手方」とあるのは「契約者」と、同条第二項及び第四項中「本人確認」とあるのは「契約者確認」と、「第十一条第一号」とあるのは「第十一条第四号」と、同条第三項中「第一項」とあるのは「第九条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貸与業者の貸与時の本人確認義務等）

- 第十条** 通話可能端末設備等を有償で貸与することを業とする者（以下「貸与業者」という。）は、通話可能端末設備等を有償で貸与する契約（以下「貸与契約」という。）を締結するに際しては、当該貸与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相手方（以下「貸与の相手方」という。）につ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貸与の相手方の区分に応じ、運転免許証の提示を受ける方法その他の総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る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以下「貸与時本人特定事項」という。）の確認（以下「貸与時

本人確認」という。)を行わずに、通話可能端末設備等を貸与の相手方に交付してはならない。

一 自然人 氏名、住居（本邦内に住居を有しない外国人で総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あつては、総務省令で定める事項）及び生年月日

二 法人 名称及び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

2 第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第四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貸与業者が貸与時本人確認を行う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中「携帯音声通信事業者」とあるのは「貸与業者」と、同条第二項中「相手方の本人確認を行う場合において、会社」とあるのは「会社」と、「役務提供契約」とあるのは「貸与契約」と、「当該相手方と」とあるのは「貸与の相手方と」と、「当該相手方の本人確認」とあるのは「当該貸与の相手方の貸与時本人確認」と、「及び第十一条第一号において」とあるのは「において」と、「本人確認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あるのは「貸与時本人確認を行わなければ、通話可能端末設備等を貸与の相手方に交付してはならない」と、同条第三項中「相手方」とあるのは「貸与の相手方」と、「役務提供契約」とあるのは「貸与契約」と、「第一項」とあるのは「第十条第一項」と、同条第四項中「相手方」とあるのは「貸与の相手方」と、「及び第十一条第一号において」とあるのは「において」と、「本人確認」とあるのは「貸与時本人確認」と、「本人特定事項」とあるのは「貸与時本人特定事項」と、第四条中「携帯音声通信事業者」とあるのは「貸与業者」と、「本人確認記録」とあるのは「貸与時本人確認記録」と、同条第一項中「本人確認」とあるのは「貸与時本人確認」と、「速やかに」とあるのは「総務省令で定める期間内に」と、「本人特定事項」とあるのは「貸与時本人特定事項」と、同条第二項中「役務提供契約」とあるのは「貸与契約」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携帯音声通信役務等の提供の拒否)

第十一条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携帯音声通信役務の提供その他役務提供契約に係る通話可能端末設備等により提供される当該携帯音声通信役務以外の電気通信役務の提供を拒むことができる。

- 一 相手方又は代表者等が本人確認に応じない場合（当該相手方又は代表者等がこれに応じるまでの間に限る。）
- 二 譲受人等又は代表者等が譲渡時本人確認に応じない場合（当該譲受人等又は代表者等がこれに応じるまでの間に限る。）
- 三 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通話可能端末設備等が譲渡された場合
- 四 契約者又は代表者等が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本人特定事項の確認に応じない場合（当該契約者又は代表者等がこれに応じるまでの間に限る。）
- 五 前条第一項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通話可能端末設備等が交付された場合

（媒介業者等の監督）

第十二条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本人確認又は譲渡時本人確認を媒介業者等に行わせることとした場合には、当該本人確認又は当該譲渡時本人確認が確実に行われるよう、総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媒介業者等に対し必要かつ適切な監督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章 監督

（報告）

第十三条 総務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携帯音声通信事業者（媒介業者等を含む。次条において同じ。）に対しその業務に関して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立入検査）

第十四条 総務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職員に携帯音声通信事業者の営業所その他の施設に立ち入らせ、本人確認記録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又はその業務に関し関係人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人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

(是正命令)

第十五条 総務大臣は、携帯音声通信事業者が、その業務に関して第三条第一項、同条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第五条第二項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条第一項（第五条第二項並びに第六条第三項及び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二項（第五条第二項及び第六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五条第一項、第七条第二項又は第十二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を是正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総務大臣は、媒介業者等が、その業務に関して第六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又は第六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若しくは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媒介業者等に対し、当該違反を是正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四章 雑則

(情報の提供)

第十六条 国家公安委員会は、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を防止するために携帯音声通信事業者が講ずる措置に資するため、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対し、役務提供契約の締結の際の本人特定事項の隠ぺいに係る手口に関する情報の提供を行うものとする。

(国民の理解を深めるための措置)

第十六条の二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の重要性について国民の理解を深め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総務大臣と国家公安委員会との協力)

第十六条の三 総務大臣及び国家公安委員会は、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し、相互に協力するものとする。

(命令への委任)

第十七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を実施するため必要な事項は、総務省令又は国家公安委員会規則で定める。

(経過措置)

第十八条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五章 罰則

第十九条 本人特定事項を隠ぺいする目的で、第三条第四項（第五条第二項、第六条第三項及び第四項並びに第九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貸与時本人特定事項を隠ぺいする目的で、第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も、同様とする。

第二十条 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業として有償で通話可能端末設備等を譲渡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2 相手方が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ことの情を知って、業として有償で当該違反に係る通話可能端末設備等を譲り受け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二十一条 自己が契約者となっていない役務提供契約に係る通話可能端末設備等を他人に譲渡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2 相手方が通話可能端末設備等に係る役務提供契約の契約者となっていないことの情を知って、その者から当該通話可能端末設備等を譲り受け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 3 業として第一項又は前項の罪に当たる行為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二十二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 一 第十条第一項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通話可能端末設備等を交付した者
- 二 第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貸与時本人確認記録を作成せず、又は虚偽の貸与時本人確認記録を作成した者
- 三 第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四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貸与時本人確認記録を保存しなかった者
- 2 相手方が第十条第一項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ことの情を知って、当該違反に係る通話可能端末設備等の交付を受け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二十三条 第二十条、第二十一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前条第一項第一号の罪に当たる行為の相手方となるよう、人を勧誘し、又は広告その他これに類似する方法により人を誘引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二十四条 第十五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二十五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 一 第十三条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した者

二 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当該職員の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者

第二十六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て第十九条から前条まで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その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附 則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 一 第八条第二項及び第九条第二項の規定 公布の日
- 二 第八条第一項、第九条第一項及び第三項、第十条、第十一条（第四号及び第五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十六条、第二十二條、第二十三條（第二十二條第一項に係る部分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並びに第二十六条（第二十二條及び第二十三條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 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

(経過措置)

第二条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役務提供契約に基づき携帯音声通信役務の提供を受けている者（以下「施行時利用者」という。）について、総務省令で定める日までの間に、運転免許証の提示を受ける方法その他の総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施行時利用者の本人特定事項の確認（以下「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という。）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り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準じ施行時利用者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項の確認が行われ、かつ、当該確認に関する記録が作成されてこれが保存されている場合
- 二 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が行われるまでの間に譲渡時本人確認が行われる場合

三 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が行われるまでの間に役務提供契約が終了した場合

2 第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第四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携帯音声通信事業者が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を行う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中「相手方」とあるのは「施行時利用者」と、同条第二項及び第四項中「本人確認」とあるのは「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と、「第十一条第一号」とあるのは「附則第四条」と、同条第三項中「第一項」とあるのは「附則第二条第一項」と、第四条第一項中「本人確認」とあるのは「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確認に関する記録は、本人確認記録とみなして、第四条第二項の規定を適用する。

第三条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を媒介業者等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2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媒介業者等に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を行わせることとした場合には、前条第一項の規定及び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を行うことを要しない。

3 第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第四条、第十二条及び前条第一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媒介業者等が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を行う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中「携帯音声通信事業者」とあるのは「媒介業者等」と、「相手方」とあるのは「施行時利用者」と、同条第二項及び第四項中「本人確認」とあるのは「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と、「第十一条第一号」とあるのは「附則第四条」と、同条第三項中「第一項」とあるのは「附則第二条第一項」と、第四条第一項中「本人確認を行ったとき」とあるのは「附則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媒介業者等が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を行ったとき」と、「本人確認に関する事項」とあるのは「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に関する事項」と、第十二条中「第六条第一項」とあるのは「附則第三条第一項」と、「本人確認又は譲渡時本人確認」とあるのは「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と、「当該本人確認又は当該譲渡時本人確認」とあるのは「当該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と、前条第一項中「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とあるのは「媒介業者等は」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四条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は、施行時利用者であって附則第二条第一項本文（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もの又は代表者等が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に応じない場合には、当該施行時利用者又は代表者等がこれに応じるまでの間、当該携帯音声通信役務の提供その他役務提供契約に係る通話可能端末設備により提供される当該携帯音声通信役務以外の電気通信役務の提供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五条 総務大臣は、携帯音声通信事業者が、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の業務に関して附則第二条第一項の規定、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若しくは第四条の規定又は附則第三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四条若しくは第十二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を是正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総務大臣は、媒介業者等が、施行時利用者本人確認の業務に関して附則第三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又は附則第二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媒介業者等に対し、当該違反を是正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六条 前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2 本人特定事項を隠ぺいする目的で、附則第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四項の規定又は附則第三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条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3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て第一項又は前項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その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当該各項の罰金刑を科する。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第七条 この附則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検討）

第八条 この法律の規定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後一年を目途として、この法律の施行状況等を勘案し、検討が加えられ、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が講ぜられるものとする。

附 則 (平成二〇年六月一八日法律第七六号)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